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동길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03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강동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수규, 이승미, 김춘례, 김혜련  
김제리, 황인구, 이상훈, 최 선  
양민규 의원 (9명)

## 1. 제안 이유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과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으로 각각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하여 제정·시행(2020. 8.12.)됨.
- 이에 기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례상 용어와 내용을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을 정의함 (안 제2조제4호, 제5호).
- 나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함 (안 제5조제2항).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”을 “벤처투자를”로,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”을 “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벤처투자조합”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”을 “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)”을 “(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창업투자조합”을 “벤처투자조합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“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“라 한다)란 <u>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</u>를 말한다.</p> <p>5. 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“(이하 “창업투자조합“이라 한다)이란 <u>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</u>을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략)</p> <p>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창업투자회사, <u>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중소기업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br/>----- <u>벤처투자를</u> -----<br/>----- 「<u>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-----.</p> <p>5. “<u>벤처투자조합</u>”이란 <u>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</u>을 말한다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 <u>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</u></p> |

투자모태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4조(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)

① 시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모태조합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)

① -----

-----

-----

--- 벤처투자조합 -----

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